

|   |        |
|---|--------|
| 선 | 기관 의 장 |
| 람 |        |

#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5-334호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제2025-335호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공람 |  |  |  |  |  |  |  |  |  |  |  |  |  |  |  |  |  |  |  |
|----|--|--|--|--|--|--|--|--|--|--|--|--|--|--|--|--|--|--|--|



## 자치법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334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가. 충무아트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공연장대관 사용료 기준 정비
- 나. 중구민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기준 확대
- 다. 상위법 인용 조항 및 자구 수정 등 조문 정비

#### 2. 주요내용

- 가. 충무아트센터 공연장 대관 사용료 기준 정비(별표)
  - 공연장 대관 사용료 조정 및 기준표 정비
- 나. 중구민 입장료 및 사용료 등 감면기준 확대
  - 기획전시 입장료(30% → 50%) 조정
  - 사용료 등 감면대상 및 기준 규칙에 규정
- 다. 상위법 인용조항 및 자구 수정 등 조문 정비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문화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문화정책과, 전화 : 02-3396-4603, 팩스 : 02-3396-8621, 이메일 : sjbeckham@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59조”를 “제156조”로, “제5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를 “제5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문화·체육분야”를 “문화·예술 분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체육시설”을 “문화·예술 시설”로 한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후원하는 대회 및 행사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이내”를 “이내 (단, 기획전시의 경우 입장료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충무아트센터 사용료 등(제14조 관련)

1. 사용료 일반기준

가. 시장가격 및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에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문화시설 사용료 개별기준

가. 공연장 및 갤러리 대관료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 구분        | 구분              | 기본대관료     | 기본사용기준          | 대상              | 비고                        |
|-----------|-----------------|-----------|-----------------|-----------------|---------------------------|
| 대극장       | 순수예술            | 공연        | 2,200,000       | 1회 3시간          | 클래식                       |
|           |                 | 준비 및 철수   | 900,000         | 오전(9:00-12:00)  |                           |
|           |                 |           | 1,500,000       | 오후(13:00-18:00) |                           |
|           | 대중 및 종합예술       | 공연        | 990,000         | 야간(19:00-22:00) | 뮤지컬, 무용, 대중콘서트, 오페라 등     |
|           |                 |           | 4,350,000       | 1회 3시간          |                           |
|           |                 | 준비 및 철수   | 1,800,000       | 오전(9:00-12:00)  |                           |
| 3,000,000 | 오후(13:00-18:00) |           |                 |                 |                           |
| 중극장       | 공연              | 1,980,000 | 야간(19:00-22:00) | 공연              | 냉·난방, 음향장비, 조명, 영상장비 등 포함 |
|           |                 | 900,000   | 1회 3시간          |                 |                           |
|           | 준비 및 철수         | 360,000   | 오전(9:00-12:00)  |                 |                           |
|           |                 | 600,000   | 오후(13:00-18:00) |                 |                           |
| 소극장       | 행사, 영화상영        | 396,000   | 야간(19:00-22:00) | 행사, 영화상영 등      |                           |
|           |                 | 500,000   | 1회 3시간          |                 |                           |
|           | 준비 및 철수         | 250,000   | 오전(9:00-12:00)  |                 |                           |
|           |                 | 375,000   | 오후(13:00-18:00) |                 |                           |
| 갤러리       | 1관              | 250,000   | 야간(19:00-22:00) | 전시              |                           |
|           |                 | 600,000   | 1일              |                 |                           |
|           |                 | 250,000   | 1일              |                 |                           |
| 3관        | 500,000         | 1일        | 컨벤션             |                 |                           |
|           | 300,000         | 4시간       |                 |                 |                           |

※ 컨벤션 : 기업 회의, 세미나, 소규모 공연 등

나.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 구분  | 대상     | 기본이용료   | 기본사용기준 | 비고 |
|-----|--------|---------|--------|----|
| 연습실 | 스튜디오 A | 200,000 | 1회 4시간 |    |
|     | 스튜디오 B | 150,000 |        |    |
|     | 스튜디오 C | 100,000 |        |    |
|     | 넥스트랩   | 150,000 |        |    |
|     | 개인연습실  | 50,000  |        |    |

다. 비고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9조 및 제161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156조 ----- 제5조 ----- |
|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생략)<br>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받은 자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br>②-----   |
| 1. (생략)<br>2. 문화·체육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1. (현행과 같음)<br>2. 문화·예술 분야 -----    |
| ③·④ (생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①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
| 1.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1. 문화·예술 시설 -----                   |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  |   |
|--|---|
| <p>② (생략)</p> <p>제14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 ④ (생략)</p> <p>⑤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기대회 및 행사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정한 지역의 주민을 제외한 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p> <p>⑥ 사용료 중 강습료와 제5항의 사용료 감면대상과 사용료를 다르게 정하는 대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⑦ 체육시설 이용료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후원하는 대회 및 행사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lt;삭제&gt;</p> <p>&lt;삭제&gt;</p> |
| <p>⑧ (생략)</p> <p>제17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①·② (생략)</p> <p>③ 수탁자는 구민에 대하여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 한도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할인 한도 - 입장료의 30퍼센트 이내</p> <p>2. (생략)</p> <p>④ (생략)</p>  | <p>⑧ (현행과 같음)</p> <p>제17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br/>-----</p> <p>1. ----- 이내 (단, 기획전시의 경우 입장료의 50퍼센트 이내)</p> <p>2.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335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례 정비에 따라 충무아트센터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기준 정비

**2. 주요내용**

- 사용료 등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정비 (안 별표/제12조 관련)
  - 보존관계 법령 등에 해당하는 자 : 50% 이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등)
  -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 30% 이내
  - 중구민 : 30% 이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후원하는 대회·행사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 이내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문화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문화정책과, 전화 : 02-3396-4603, 팩스 : 02-3396-8621, 이메일 : sjbeckham@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5항”으로, “징수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사용료 등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제12조 관련)

| 연<br>번 | 감면대상   | 감면비율    |
|--------|--|---------|
|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이내  |
| 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이내  |
| 3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0% 이내  |
| 4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이내  |
| 5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이내  |
| 6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이내  |
| 7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이내  |
| 8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이내  |
| 9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30% 이내  |
| 1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30% 이내  |
| 11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30% 이내  |
| 12     |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 30% 이내  |
| 13     | 「주민등록법」에 따라 중구에 주소를 둔 주민   | 30% 이내  |
| 14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후원하는 대회·행사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 이내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2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p> <p>② (생 략)</p> | <p>제12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제14조제5항-----<br/>----- 감면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